탄 원 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제1심 선고 전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431
피고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인	_____
탄원 취지	개별 책임의 신중한 판단 및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양형 요청

1.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의 말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김대기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정치적 평가나 사회적 파장의 크기만으로 결론지어지지 않고, 그가 직접 행사한 권한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에 따라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외면하거나 공적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감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되, 그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주의의무와 지휘 책임에 관한 사회적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의 무게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충분히 살피셨을 모든 증거를 존중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부분만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7][9]

2.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항변을 함께 보아 주십시오

특검은 2022년 관저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약 20억 9천만 원이 부적법하게 전용·집행되도록 김대기 등이 지시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공사 업체의 견적과 적격성에 관한 검증 부족, 관계 공무원의 반대, 예산 집행 및 인사상 압박 의혹도 공소장 보도와 검찰 주장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국고 관리와 공무원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관련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2][3]

김대기 측은 공적 성격의 관저 이전 공사였고 예산 전용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며, 비서실장에게 타 부처의 예산을 직접 전용할 직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어 왔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장이 기각되더라도 왜 어떤 증거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피고인별로 분명히 설명되기를 바랍니다.[5]

3. 관리 주체와 2022년 당시 예산법규를 적용하는 문제

2026년 7월 2일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옛 외교부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 변경된 뒤, 공사 단계에서 어느 기관이 실질적·법률적 관리 주체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언급하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남용되었다는 직권의 귀속, 직권남용 상대방 및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구체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특검이 공소사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므로, 그때의 지적이 최종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4]

국가재정법 제45조는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제46조는 예산 목적 범위와 승인·위임 요건, 당초 예산에 없는 사업의 추진이나 국회의 의결 취지에 반하는 집행의 전용 제한을 규정합니다. 판단에는 반드시 2022년 당시 시행 법령과 승인 위임 범위, 원래 예산의 세항·목 및 공사 지출 목적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공적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승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산 집행상 문제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을 모두 실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8][9]

4. 김대기 자신의 직권, 행위 및 결과를 나누어 판단하여 주십시오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위법·부당하게 직권이 행사되었는지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를 구별합니다. 권한이 직접적인 결재권이 아니라 조정·감독의 형태로 행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남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 협의와 부당한 지시도 구분해야 합니다.[7]

김대기의 경우 어떤 권한에 기초하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전용 또는 집행을 요구했는지, 상대 공무원이 원래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조치와 실제 요구받은 조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피고인이나 실무자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김대기에게 공동의 의사와 실행에 관한 기능적 역할이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이 귀속되기를 바랍니다.

5. 면담 일지의 증거가치와 반대증거를 균형 있게 살펴주십시오

2026년 10월 19일 보도는 2022년 7월 초 김대기와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사이의 면담에 관한 일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지 초안 작성 실무자는 법정에서 문서에 적힌 여러 예산 조달 방안이 면담 중 오간 대화라기보다 사전 검토용으로 준비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관련 공무원도 면담의 방식과 시간에 관하여 일지의 기재와 다른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며, 법원 공판조서·문서 원본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6]

일지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증언 하나로 직접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담 당시 실질적인 발언 내용과 사전에 준비된 예산 조달 검토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원본·초안 작성 시점, 수정 경위, 작성자의 인식, 참석자의 직접 경험, 이후 실제 예산 처리 문서와 연락 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직접 지시가 입증되는 부분은 그에 맞게, 합리적 의심이 남는 부분은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고 판단해 주십시오.[11][12]

6. 불리한 정황 또한 사실인정의 범위에서 엄정하게

특검은 부적절한 예산 처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인사를 통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거 훼손이나 진술 회유가 입증된다면 그 사정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다투거나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와 증거인멸 행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1]

또한 업체 선정의 부적절성, 공사비의 증가, 다른 관계자의 인사상 불이익 의혹이 모두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하나의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로 묶은 뒤 개별 피고인의 인식·지시·공모가 증명되지 않은 범위까지 돌려 책임을 묻는 일은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죄로 판단하실 경우에는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양형을

만일 재판부가 일부 또는 전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저는 책임을 회피하게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개인별로 세심하게 살펴, 피고인이 처음부터 설계·주도한 행위와 관여한 범위, 발생한 실질적 결과, 다른 관계자와의 책임 차이를 합당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10]

피고인 측은 사익·특혜·은폐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동기, 개인적 이득의 유무, 공적 업무와의 관련성은 적절한 양형에서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건강·가족·반성 등의 사정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확인된 유리한 정상도 빠짐없이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1]

8. 결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국가 재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과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정하는 일은 모두 사법부가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기 피고인이 고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비난을 받거나, 반대로 그 지위 때문에 책임이 경감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직권 행사와 결과, 고의 및 공동가담의 범위를 끝까지 엄밀히 가려 주시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십시오. 유죄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하시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재판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참고자료

[01] 연합뉴스 | 2026. 10. 16. 결심공판, 구형 및 선고 예정

[02] 연합뉴스 | 2026. 6. 9. 기소 사실과 피고인별 혐의 구분

[03] 연합뉴스 | 2026. 6. 12. 공소장 보도: 예산 부족, 관련 발언 및 압박 주장

[04] YTN | 2026. 7. 2. 공판준비기일: 직권·상대방·공모 및 관리 주체 쟁점

[05] 연합뉴스 | 2026. 7. 22. 첫 공판과 피고인별 무죄 주장

[06] 조선일보 | 2026. 10. 19. 면담 일지 작성자 등의 증언 보도

[07] 대법원 |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재정법 연혁, 제45·46조 (2022년 당시 판본 확인)

[0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